##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38

발의연월일: 2025. 1. 15.

발 의 자:김태선·정준호·강득구

이병진 • 이학영 • 김남근

맹성규 • 권칠승 • 윤종군

윤준병 · 장철민 · 이훈기

강유정 • 이용우 • 박홍배

김태년 • 박 정 • 안호영

김주영 의원(1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의 42.3%인 55,007건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고, 누적 7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도 1,070건에 달하고 있음.

또한, 2023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결과에 따르면음주에 관한 경고문구의 면적과 최소크기 기준의 준수율은 각각 22%와 16.7%로 나타났고, 색상 기준의 준수율은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경고문구 표기와 음주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이를 강제할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와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도록 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34조제1항).

#### 법률 제 호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다음 각 호의경고문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 2.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 3.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무구
-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있다.

제34조제1항제1호의3을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8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문구 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	4
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	
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	
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	
기에 <u>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u>	<u>다음 각 호의 경고문구</u>
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u>내용의 경고문구</u> 를 표기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1.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
<u>&lt;신 설&gt;</u>	<u>다는 내용의 경고문구</u> 2.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 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
<u>&lt;신 설&gt;</u>	고문구 3.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는 내용의 경고문구
⑤・⑥ (생 략)	5·⑥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의2. (생 략) <u><신 설></u>

 1의3. (생 략)

 2. ~ 4. (생 략)

 ② ~ ⑤ (생 략)

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 ① ------

-----.

1. ·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8조제7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4. (현행 제1호의3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